

의안번호	2201946
의 퇴 인	손명수 의원
회 답 일	2024. 9. 23.
추계번호	24D1923

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3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 3,000만원(연평균 4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6조 및 제7조)	230	-	-	-	-	230	46

주: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및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·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(안 제6조제1항) ·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7조)	의무규정
2	안 제8조(기본계획 등의 심의)	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함 -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(제1호) -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제2호) - 제12조에 따른 특례부여 요청에 관한 사항(제3호) -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제4호)	의무규정
3	안 제9조(사무특례)	특례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→ 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삭제되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사무 -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등(제4호)	재량규정

		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(제6호) 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(제7호)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(제9호) -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(제10호) 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검사 등(제11호) 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지역물류현황조사(제13호) -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시 협의,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작성·제출(제14호) -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(제16호) -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(제19호) -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고·검사 등(제20호)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, 사용약관 신고 및 시설 사용료 인가 등(제21호)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·징수·환수·반환 등(제23호) - 「주택법」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인수 등(제24호) -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설치·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(제26호) - 「하천법」에 따른 관할 구역의 지방하천 관리 및 폐천부지등의 관리(제29호) 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관한 의견 제시(제31호) -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특례시의 사무로 규정하는 사항(제33호)	
4	안 제10조(영향평가)	·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에 대한 특례 등이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 ·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의무규정
5	안 제11조(특례시에 대한 지원)	국가 및 도는 특례시가 제9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및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○	-
2	안 제8조(기본계획 등의 심의)	-	미대상: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인 '지방시대 위원회 운영(1132-325)' 중 내역사업인 '위원회 회의운영'에 연간 12회 지방시대위원회 개최를 위한 1억 200만원(2024년도)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9조(사무 특례)	×	제정안에 따라 추가될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될 신규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하기가 곤란함
4	안 제10조(영향평가)	×	영향평가의 시기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5	안 제11조(특례시에 대한 지원)	×	특례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국가 및 도의 재정 지원 규모 및 지원 비율 등을 추정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「지방자치법」¹⁾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'특례시'로 분류²⁾하면서 행정·재정 운영 및 지도·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제정안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(안 제6조) 및 시행계획(안 제7조)을 수립·시행하게 하려는 것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(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·군·구의 행정,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·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.
 1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이하 "특례시"라 한다)
 2. 실질적인 행정수요,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·군·구

2) 현행법에 따른 특례시는 경기도 수원시, 경기도 용인시, 경기도 고양시, 경상남도 창원시 4곳임(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-102호)

으로 이에 따른 연구·용역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

- 본 추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를 행정안전부의 유사 연구·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-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및 예산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안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및 안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- 비용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유사 연구·용역³⁾의 평균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 첫해인 2026년에 2억 3,0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제1차 재난안전산업 진흥 계획(2024~2028년)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(2023년), 1억 3,700만원
 - 인구감소지역 대응(2022~2026년)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(2022년), 3억 2,700만원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연구·용역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

[표 2]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	230	-	-	-	-	2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3) 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.go.kr)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지수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4831	zisu37@nabo.go.kr